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성명서

2026년 10월 6일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김태규의원의 발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고발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소속 김태규 의원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9월 30일, 김태규 의원은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하여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서슴없이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재차 묻자 또다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실로 충격적인지 발언입니다.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사회적·역사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눈물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 대법원은 이미 30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두환과 신군부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판정하였습니다.

전두환을 수괴로 한 신군부세력은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것이고, 그런 군사반란과 내란은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또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전두환과 신군부세력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며 이에 대항한 시민들의 항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5.18민주화운동법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와 시민학살이라는 범죄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전두환의 내란죄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처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하여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법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함부로 무시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망언입니다.

◎ 광주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진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지금도 그 상

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발언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김태규 의원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현역 국회의원이 공개 방송에서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망언을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적 성찰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 김태규 의원은 전체적인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구차한 유감표명을 하였으나 그런 정도로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태규 의원은 5.18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태규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